국회 대기·의원총회…여야 모두 비상체제 가동

헌재앞 긴장 고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버스와 병력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용이냐 기각이냐…숨죽인 정치권

한국당 "탄핵 기각·각하 기대"
민주 "박대통령 승복 선언을"
국민의당 "인용 의심치 않는다"
바른정당 "기각땐 의원직 총사퇴"
대선주자들 일정 줄이고 촉각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여야 정치권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이 조기대선 실시 여부로 직결되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골몰하는 한편, 일부 대선주자들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내부적으로 헌재의 탄핵 기각 및 각하 기대감이 작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긴급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전략 마련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헌재의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 뒤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들도 한국당과 야권 주자 간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긴장감 속에 각자의 대선 행보를 소화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비대위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야권 주자들은 아예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하는 기류 속에서도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 없이 헌재의 탄핵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 일정을 비우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지사는 10일부터 사흘간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 지사 측은 "통합의 마당이 돼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가 현장에 나타나 환호하는 것 등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조계사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과 관련해 "바른 길을 훼손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승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촛불을 더 높이 크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방송 출연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차분하게 탄핵 후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경선 준비에 공을 들였지만, '포스트 탄핵'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일정은 취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전 11시 예정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 소추에 찬성한 30명 정도 의원들은 한국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박계의 결단을 주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에 TV 생중계…30분~1시간 소요
탄핵사유 판단 앞서 헌정사적 의미 언급

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1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분에서 1시간여 남짓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선고 기일은 오전 11시 정각에 맞춘 재판관들 입장과 함께 전국에 생방송된다.

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간 헌재가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우선 언급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한 뒤 본격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틀에 따라 선고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서 강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로 나눈 바 있다.

이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이 같은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재분류해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고 마지막엔 탄핵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탄핵사유를 모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인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을로 보인다.

여기서 일부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인정되면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반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모이면 탄핵은 기각되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인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개별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재판관의 이름은 개정 헌재법에 따라 모두 공개된다. 특히 선고 도중 소수의견 재판관 중 최선임이 왜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는지 설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탄핵 불복시 재심 요건은?…명문 규정은 없어

헌재 중대한 법 절차 위반땐 가능
朴측 "8인체제 위법" 행보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심판의 재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 양측에서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